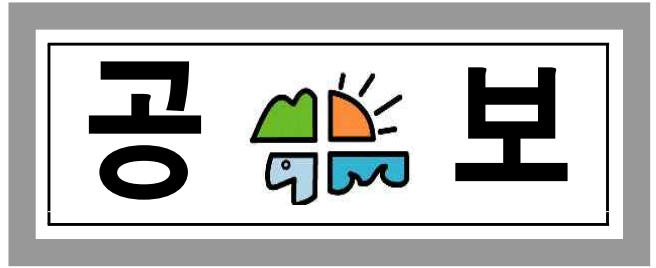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81-1호 2012년 3월 8일(목)

공 고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 월 8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의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선발하는 장학생이 일부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청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신청자격을 새롭게 규정하기로 함(제5조)

-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선발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
- 고등학교 모범학생 신청 기준을 정함
- 신입 대학생과 재학생의 신청기준을 정함.
- 예능·체능 분야의 장학생의 신청기준을 정함.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기획조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담당

(전화: 033-639-2311, 2180 FAX: 033-639-2380, Eail: an3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조정담당 담당자 안선영(전화:033-639-23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를 “「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3.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제7조중 “다음 각 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규칙은 <u>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규칙은 「 <u>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회 구성) ① <u>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에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 이하 생략 ~	제2조(장학회 구성) ① 「 <u>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에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하 생략 ~
제5조(장학생의 신청자격) <u>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 1. <u>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범 고등학생</u> 2. <u>직전(前) 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모범 고등학생</u> 3. <u>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대학생</u> 4. <u>지역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중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4.0이상인 대학생</u> 5. <u>재학기간 중 예·체능 분야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u>	제5조(장학생의 신청자격) <u>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u>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u> 2. <u>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u> 3. <u>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6. <u>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고등학생·대학생은 신입생의 경우 직전(前) 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재학생의 경우 직전(前) 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고등학생 또는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3.5 이상인 대학생</u>	4. <u>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앙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u>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u>다음 각 호 1에</u>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